

Tax News Flash

- Transfer Pricing & Customs

August 04, 2025

삼성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 이전가격

OECD: 최신 국가별 이전가격 Profile 발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는 2025 년 7 월 22 일, 12 개 국가(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아일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의 최신 법률 및 실무를 반영한 최신 국가별 이전가격 Profile 을 발표했습니다.

- 최신 국가별 이전가격 Profile에는 평가가 어려운 무형자산(hard-to-value intangibles)에 대한 이전가격 처리, 그리고 기본적인 마케팅 및 유통 활동(baseline marketing and distribution activities)에 적용되는 단순화된 접근 방식에 관한 국가별 법령 및 실무 내용이 새롭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 해당 Profile은 각국의 국내 세법상 이전가격과 관련된 핵심 사항인 정상가격 원칙, 이전가격 방법론, 비교가능성 분석, 무형자산, 그룹 내 서비스, 비용분담계약, 문서화 요건,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행정 절차, 세이프하버 및 기타 이행 조치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이전가격 국가 Profile 업데이트는 2025년 한 해 동안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며, 이번 두 번째 발표 자료(24년 5월 1차 업데이트 발표)에는 총 78개 국가 및 관할지역의 정보가 포함되었습니다.
- 수록된 정보는 각국이 OECD 이전가격 관련 설문에 직접 응답하여 제출한 자료로, 높은 정확성과 신뢰도가 보장됩니다.

프랑스: 정상가격 사전승인제도 운영에 관한 새로운 현장 발표

2025년 4월 16일, 프랑스 국세청(FTA)은 기업과 국가공공재정총국(DGFIP) 간의 정상가격 사전승인제도(APA) 운영에 관한 새로운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배경

프랑스 정부는 2023년 6월 2일 발표한 공공재정 부정행위 방지 로드맵을 통해 납세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예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PA 심사팀의 인력을 증원하고, 요청 처리 속도 제고 및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만, 연 매출 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의 프랑스 법인에 대해 APA 신청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은, 행정역량 부족과 심사 절차의 장기화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요 내용

FTA가 발표한 이번 내용은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 상호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양측의 일정 및 업무 진행 방식에 부합하는 협업 체계를 새롭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FTA가 기존 가이드라인에서 도입된 절차를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APA 검토 체계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밀 유지 규정의 명문화, 소급(Roll-back) 요청에 대한 3년 이내 제한, 개정된 심사 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납세자는 신청서 제출에 앞서 FTA와의 사전 미팅(pre-filing meeting)을 통해 APA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과세당국과의 기대치 조율 및 자료 준비 방향을 사전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호주: Pillar Two 신고 의무에 관한 초안 행정지침

호주 국세청(ATO)은 필라2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전환기 적용방식 및 기대사항을 담은 초안 행정지침 PCG 2025/D3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OECD의 전환기 페널티 면제 방안(framework for transitional penalty relief)을 반영하였으며, 필라2 관련 사전결정 제도에 대한 해석 기준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행정 지침에 따른 필라2 신고의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글로벌최저한세 정보 신고서 (GloBE Information Return, 이하 'GIR')
- GIR 관련 현지 notification 서식(GIR foreign notification form, 이하 'GIR FNF')
- 소득 산입 규칙 및 소득산입보완규칙 세금 신고서(Australian income inclusion rule and undertaxed profits rule tax return, 이하 'AIUTR')
- 국내 최저한세 신고서 (Domestic minimum tax return, 이하 'DMTR')

해당 신고의무는 호주에서 글로벌 및 국내 최소한세 통합 신고서(Combined Global and Domestic Minimum Tax Return, 이하 'CGDMTR')로 일원화되었으나, GIR은 별도 제출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필라2 신고기한은, 결산일이 12월 31일인 다국적 기업 그룹(Multinational enterprises, 이하 'MNE 그룹') 은 2026년 6월 30일, 6월 30일인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MNE 그룹은 호주 내 대표 제출 법인을 지정하여 개별 법인 대신 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전환기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되고 2028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적용되며, 이 기간 동안 ATO는 CGDMTR 및 GIR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해 MNE 그룹당 하나의 과태료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감경할 예정입니다.

또한 ATO는 기업이 의무 이행 노력을 입증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의 예로, 충분한 자료 보관, 기한 내 신고서 제출, 오류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ATO의 Taxation Ruling TR 2006/11DC에 대한 초안 개정은 OECD 가이드라인과의 정합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OECD 행정지침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거나, 관할권 내 세법 적용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국세청장이 사전결정(private ruling)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초안 지침에 대해 2025년 8월 29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02 국제조세

최신예규/판례: 사전-2024-법규국조-0503, 2025.05.15.

제목: 파트너십이 국조법상 cfc 대상인 외국법인에 포함될 수 있는지

1. 사실관계

- 국내 법인이 미국 법인 'A Corp'의 주식 100%를 인수함.

-
- 그 결과 총 19개국 30여 개의 법인 및 단체를 국조법(§2①3호)상 특수관계인으로 편입하게 됨.
 - 국외특수관계인 중 미국 관련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파트너십 'B LP'는 미국 현지에서 투과과세되는 단체(pass-through entity)에 해당하여 구성원인 'A Corp'이 납세의무를 부담함.

2. 질의요지

-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국외 파트너십이 현지에서 투과 과세되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국조법 제27조 제1항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외국법인에 포함될 수 있는지.

3. 답변내용

- 파트너십이 「법인세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외국법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에서 제시된 파트너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4. 관련 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1.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부담세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일 것

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 ×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의 70%

2. 해당 법인에 출자한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에 있을 것

②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③ 내국인이 외국신탁(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정된 신탁으로서 「법인세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과 유사한 것을 말한다)의 수익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외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부담세액 및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② 제1항과 이 법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용어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용어의 예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8호 및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 따른 용어의 예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2. 「법인세법」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2.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3. 삭제 <2019.2.12>

4.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도입

1. 개요

7월 1일부터 시행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의 핵심은 “과세가격 신고자료 (이하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도입입니다. 본 제도는 과세자료 제출 대상 기업 중 8개 항목(① 권리사용료, ② 생산지원, ③ 수수료, ④ 운임·보험료, ⑤ 용기·포장비용, ⑥ 사후귀속이익, ⑦ 간접지급금액, ⑧ 특수관계자 거래)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기업은 매년 1회, 각 항목별로 최소 1건 이상의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며, 이는 기존 신고 방식보다 제출 방식이 체계화되고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입니다.

해당 제도는 2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9월 1일 수입신고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9일 발송 드린 뉴스레터를 통해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을 안내드린 바 있으나, 본 제도는 납세의무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인 만큼, 어떤 기업이,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 제도 도입배경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수입신고 단계에서 필요한 과세자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출·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반복 제출에 따른 비효율, 제출 기준의 모호성, 사후심사 과정에서의 자료 확보 한계 등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과세당국과 납세자 모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1) 반복 제출의 비효율 해소 및 제출 기준의 명확화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핵심은 권리사용료, 수수료, 생산지원 등 8개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매년 1회 각 항목별로 최소 1건의 과세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존처럼 수입신고 건 별로 반복 제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납세자의 제출 부담을 줄이면서도 신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변화입니다.

구분	현행	개정
제출의무자	모든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자료 제출 의무	성실납세자 (ACVA 승인업체, AEO 업체) 및 소규모 납세자 (연간 납부세액 5억 원 미만)에게 과세자료 제출의무 면제

제출빈도	모든 과세가격 신고 건에 대해 과세자료 반복 제출	동일 조건의 수입 건에 대해 과세자료 제출 생략
제출자료 명시	납세의무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과세자료 제출 요구 (예: 계약서, 증빙자료 등)	과세자료를 8개 분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안내

※ 과세가격 1만 불 이하인 물품은 가격신고 생략 대상에 해당하지만,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격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 과세자료 제출 필요 (① 가산 요소가 있는 물품, ② 간접지급액이 있는 물품, ③ 제2방법~제6방법 물품, ④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물품, ⑤ 잠정가격 신고대상 물품, ⑥ 사전세액 심사대상 물품)

2) 사전 자료 확보를 통한 사후 검증 기반 마련

- 기존에 관세청은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관세조사에서 이전가격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에 따라 자료 미제출 시 부가가치세 불공제나 최대 3억 원의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시행해왔습니다.
- 그럼에도 과세가격 검토에 과도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본사와의 입장 차이나 자료의 완전성 부족으로 인해 심사가 지연되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세청은 수입신고 단계에서 필요한 과세자료를 사전에 확보하고, 사후심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 제출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절차 개선을 넘어,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관세당국의 정책적 방향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3. 주요 개정사항

1) 분야별 제출해야 할 과세자료

과세자료 제출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납세의무자는 다음 분야별로 1개 이상의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야 (8개)	과세가격결정자료 (분야별 1개 이상)
① 권리사용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계약서
	로열티 관련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② 생산지원	생산지원 관련 계약서
	수입물품 생산 관련 물품 및 용역 산정 내역서 또는 공급 내역서

③ 수수료·중개료	수수료·중개료 등 계약서
	수수료·중개료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④ 운임·보험료·기타 운송관련 비용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에 대한 계약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⑤ 용기·포장비용	해외포장용역계약서, 용기임대 계약서
	해외포장용역 및 용기임대 비용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⑥ 사후귀속이익	수입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 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과 관련된 계약서
	사후귀속이익 관련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⑦ 간접지급금액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 상계 금액 관련 자료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한 금액 관련 자료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 관련 자료
	간접지급금액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⑧ 특수관계자 거래	관세법상 수입물품 가격 결정자료
	수입물품 관련 이전가격 보고서 또는 설명 자료

2) 사례별 과세가격 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 대상 정리

과세가격 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 필요 여부를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별로 정리하였습니다.

구분		가격신고 대상	과세가격 결정자료 제출대상
1-1	① 연 납부세액 5 억 원 미만인 기업 ② AEO 기업	가격신고 대상	과세자료 제출 생략
1-2	① 연 납부세액 5 억 원 이상인 기업	가격신고 대상	과세자료 제출 대상 ▶ 같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은 조건으로 물품을 반 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연 1 회 제출
2-1	① ACVA 결정물품	가격신고 생략	과세자료 제출 생략
2-2	① ACVA 결정물품 (잠정가격 신고대상 물품)	잠정가격 신고 대상	최초 잠정가격신고 건에 과 세 자료 제출
3-1	① 무상 샘플 ② AVCA 결정 물품 X	가격신고 대상	과세자료 제출 대상

	③ 과세가격 1 만 불 이하 ④ 연간 납부세액 5 억 원 이상	▶ 과세가격 1 만 불 이하인 경우, 특정 요건 (가산 요소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격신고 대상임	▶ 무상샘플 물품이 여러 가지일지라도 가격결정방법은 한 가지인 경우, 과세가격 결정자료는 연 1 회 제출함 ▶ 해외 거래처가 여러 곳인 경우, 해외 거래처별로 1 회씩은 제출하여야 함
3-2	① 무상 샘플 ② AVCA 결정 물품 X ③ 과세가격 1 만 불 이하 ④ 연간 납부세액 5 억 원 미만	가격신고 대상 ▶ 위와 동일	과세자료 제출 생략
4	① 유상 샘플 (1 방법) ② 과세가격 1 만 불 이하	가격신고 생략	과세자료 제출 생략
5	①과세가격 1 만 불 초과 (샘플 여부 무관)	가격신고 대상	1) 과세자료 제출 대상 ▶ 같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은 조건으로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연 1 회 제출 2)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 제출 ▶ 과세가격신고 건이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 (8 가지 분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 가격 결정자료 미제출 사유서를 가격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자료 제출을 갈음 → 과세가격 1 만 불 초과 물품이 공제 요소만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미제출 사유서는 제출해야 함

4. 중점 점검 사항

이번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제도에 대한 원활한 대응을 위해 기업이 준비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형별 과세가격 신고 대상 해당 여부 분석

- 수입자, 수출자, 거래 유형, 수입물품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과세가격 신고 대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 특히, 특수관계자 간 거래, 로열티 지급 여부, 간접지급액 존재 여부 등 주요 과세 요소를 고려한 유형 분류가 필요합니다.
▶ 수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형별로 과세가격 신고 대상 해당 여부를 사전에 판단

2) 유형별 과세가격 산정방법 검토

- 동일 조건 하 반복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매년 최초 수입 건에 대해서만 신고하고 이후 동일 조건 거래에는 최초 신고번호를 인용하여 일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해 해당 거래가 '동일 조건의 반복 거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이에 적합한 산정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유형별 과세가격 산정 기준 및 반복성 검토를 통한 효율적 대응 전략 수립

3) 과세가격 신고 및 관세조사 대응을 위한 사전 자료 준비 전략

- 가산 요소, 간접지급액 등 8개 분야별 과세자료를 정리하고, 각 항목별 증빙자료를 사전에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향후 정기 관세조사에 대비하여, 공급계약서, 라이선스 계약서, 비용 분담계약 등 주요 계약서류에 기초하여 각 항목의 과세가격 가산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특수관계자 거래, 로열티, 가산 요소 등 항목별 자료 정비 및 자료 제출 전략 수립

4) 특수관계자 거래에 따른 과세가격 신고를 위한 '근거자료' 및 '관세 목적의 과세가격 결정 보고서' 작성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거래 조건, 이익률, 기능분석 등)에 대해 관세당국이 요구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 관세 목적에 부합하는 형식과 논리로 재정비하여 별도 근거자료 작성이 필요합니다.
▶ 신고서, 사전 자료, 관세 관점의 과세가격 결정 보고서 등 근거자료 작성 및 정비 (관세 측면 과세가격 결정 보고서)

[KPMG 의견]

이번에 시행되는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 제출 제도는 2023년 7월 개정된 관세법에서 신설된 '과세가격 관련 자료 보관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지침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은 과세관청이 과세가격 산정과 관련된 자료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기업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식이 관세 관점에서 적정한지 점검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함으로써 향후 관세 심사에 따른 리스크를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KPMG는 납세자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적정하게 신고하고, 향후 관세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세 목적에 특화된 관세 측면 과세가격 검토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본 보고서는 관세청의 요구 수준에 맞춰 거래 조건, 계약 구조, 가격 결정 방식 등을 분석하여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입증하고, 관세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며 방어 논리를 체계화해 수입신고 단계부터 사후심사까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Contact Point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ey Contacts

삼성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이영호 상무

T. 02-2112-6763



황수주 상무

T. 02-2112-6782



김태주 전무(관세)

T. 02-2112-7448



오영빈 상무(관세)

T. 02-2112-0435



김민철 상무(관세)

T. 02-2112-6677

home.kpmg/socialmedia



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